



- ▶ COVER STORY:
AEO 제도의 현재..... 1
- ▶ FTA News: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실무.. 2
- ▶ VOICES FROM THE FIELDS:
MERCOSUR(남미공동시장)
의 현황과 과제③ 3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⑩..... 4
- ▶ WHERE IS GRACE CHANG?:
6
- ▶ ABOUT WRITERS..... 6

○ 발간호 | ○ 제 20 호 | ○ 2010 년 4 월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2009 년 5 월부터 관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종합인증우수업체(이하 "AEO") 인증 제도는 18 개의 수출입업체 및 물류업체가 AEO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관세청은 2010 년에 약 250 개 업체가 AEO 인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EO 제도의 현재

2009 년 5 월부터 관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이하 "AEO") 제도는 18 개의 수출입업체 및 물류업체가 AEO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관세청은 2010 년에 약 250 개 업체가 AEO 인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거래업체에게 AEO 제도에 참여하거나 또는 AEO 제도가 요구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므로(즉, AEO 인증을 받은 물류공급망 당사자와의 거래를 선호하게 됨) 연쇄적으로 AEO 제도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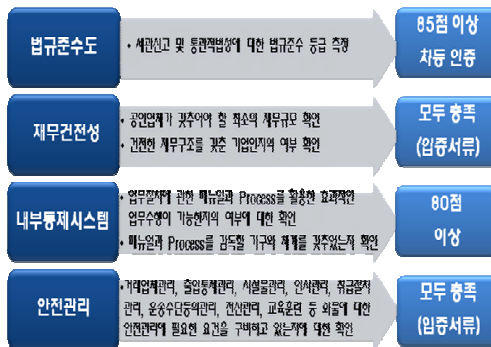
AEO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AEO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알아봄으로써 AEO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한다.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

AEO 인증기준은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의 4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법규준수도

법규준수도는 관세청에서 해당 업체의 법규준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해당 업체의 법규준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법규준수도 점수는 AEO 공인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AEO 인증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관세 등 국세의 체납 없고 ② 회계감사 결과 적정하며 ③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고 ④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 하는 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무건전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AEO 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3)내부통제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에서는 기업이 안전관리와 법규 준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업무에 관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여부를 이 영역에서 확인한다.

(4)안전관리

안전관리는 거래업체관리, 출입통제관리, 시설물관리, 인사관리, 취급절차관리, 운송수단등의 관리, 전산관리, 교육훈련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광범위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안전관리영역에서 요구하는 AEO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요구되는 항목을 반영하여 업무절차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

(1)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라!

AEO 준비 전에는 해당 업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무절차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업체가 AEO 의 요구내용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2)개선계획을 세우자!

AEO 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안전관리기준은 인사, 전산, 회계, 구매, 물류에 걸쳐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하는 업무절차를 적정한 부서가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들이 새롭게 주어진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문서화보다 실행이 중요!

새로운 내용의 안전관리절차를 구축하였다면, 실제로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그러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또는 절차에 따라 실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체의 관리자는 담당자의 업무절차 숙지상태와 실행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4) 실행은 항상 기록으로 유지할 것!

AEO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업체들은 안전관리절차의 실행자료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기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꼭 AEO 인증을 위한 대비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담당자의 업무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임직원과 담당자의 의지

AEO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업무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담당자와 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새로이 추가된 업무를 부담으로만 받아 들인다면 쉬이 정체될 수 밖에 없으므로 담당자 및 관리자가 스스로 자신이 하는 업무의 필요성을 주지시켜 의지를 굳건히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사적인 움직임

AEO 인증기준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의 모든 부서에서 새로운 절차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절차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야지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즉, 전사적인 준비가 기반이 되어야 AEO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coordinator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신한관세법인

AEO T/F Team

관 세 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FTA News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비하여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는 협정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협정에서 정한 양식 또는 일정문구를 삽입하여 발급하는 자율발급방식(한-칠레 FTA, 한-EFTA FTA)으로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기관발급방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및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및 유의사항

1. 발급 준비

1) HS CODE에 대한 검토

HS CODE 6 단위까지의 품목분류는 국제협약에 따라 각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0 단위의 품목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 6 단위까지의 HS CODE는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동일한 물품임에도 나라마다 상이하게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다.¹ 우리나라와 수출상대국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출상대국 세관에서는 우리나라 HS CODE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산지증명서의 Overleaf notes(뒷면)의 6 항에서 "The Harmonized System number shall be that of the importing party"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상대국에서 적용하는 HS CODE를 우선 적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당시 수출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하고, 입증서류를 구비해 적용한다면 불필요하게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2) 원산지소명서 작성

원산지소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역내부가가치의 산정, 수출물품의 HS CODE 및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작성한 신고서로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필수 구비서류에

발급 신청 시기

- 선적 전 (또는 선적일로부터 7 일)

구비 서류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수리 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 후 제출 가능)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해당한다.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신고 필증상의 물품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이한 물품이라도 원가내역과 자재명세서가 동일하다면 한 건의 원산지소명서로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류의 구분 구비

원산지확인서류에는 대표적으로 원산지확인서와 수출용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다. 원산지 확인서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인 반면, 수출용 원재료원산지(포괄) 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용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로서 공급받은 자의 추가 제조·가공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수출자가 수출물품 또는 원재료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확인서류를 통해 증빙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원산지를 증빙하지 못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본지사간 거래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별도의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사업체로서 원산지확인서류를 통해 원산지 및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

2. 발급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1) 발급신청시기

- **원칙:**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수출 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발급기관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수출물품의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 일 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예외:**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을 못한 경우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3. 발급 후 관리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서명카드를 통해 서명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서명권자만이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을 통해 발급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2)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 확인 및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산지 검증을 위하여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대비

업체별 또는 품목별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모든 FTA 협정 및 물품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을 받은 물품(HS CODE 6 단위 기준)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만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반력실적이 2년간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확하고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 원산지증명서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

1.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 요건 불충족시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 년이 경과된 경우
3. 계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 요건 불충족시
4. 계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시
5. 제출된 서류의 보정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6.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¹ 예를 들어 디지털 멀티미디어 이동방송(DMB)을 시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경우 한국은 주 기능을 전화로 보아 '휴대전화 8517.12(관세율 0%)'로 분류하였으나, 독일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한국산 DMB 휴대전화를 'TV 수신기기 8528.72 (관세율 14%)'로 분류하여 견해가 상충되었다. 그러나 이들 물품을 일반 휴대폰(관세 0%)으로 분류하는 안이 최종 승인되어 분쟁은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다.

신한관세법인
FTA T/F Team
관세사 최 대 규
dkchoi@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중남미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③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중남미 지역은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수출지향형으로 자리잡은 70년대부터 항시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손꼽아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약 33 개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이들 각국의 무역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복잡하므로, 다른 유럽 등의 지역과는 달리 다수의 지역통합을 위한 공동체가 설립되어 있는 독특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남미지역 역내 및 역외의 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Mercado Comunal del Sur'라는 원어의 줄임말로 직역하면 '남쪽(Sur)의 공동(Comun) 시장(Mercado)'을 뜻한다.

1995년 남아메리카지역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공동체로서 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4 개국. 베네수엘라는 회원국 인준 절차를 밟고 있고, - 현재 파라과이만 미승인 -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페루 및 콜롬비아가 협력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어, 베네수엘라를 포함하면 인구 2억 6천만 명, GDP 1조 7천억 달러를 넘는 거대 시장이다.

□ MERCOSUR의 의의와 특성

MERCOSUR의 결성은 중남미의 경제 통합에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였다. 과거의 경제 통합의 시도가 수입 대체 산업화와 역내 국가로의 교역의 단순한 전환을 통한 소극적인 방식이었다면 MERCOSUR는 개방화와 상호 경제보완에 근거한 새로운 교역의 창출 시도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개방적인 모델이다. 경제공동체로서 MERCOSUR는 선진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EU나 NAFTA와는 달리 개도국들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MERCOSUR의 목표는 초기에는 자유무역 지대에서, 관세동맹으로, 궁극적으로는 회원국들 간의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시장 형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MERCOSUR는 대외공동관세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관세동맹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일정 기간 예외품목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의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 개방형 공동체로서 특성을 보여 이스라엘과 FTA 발효(2010. 4월)되었고, 비록 진전을 느리지만 EU, 중동, 아프리카 등과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도 공동연구를 마치고 곧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 MERCOSUR의 문제점

그러나 MERCOSUR의 관세동맹체제는 여타 중남미의 공동체처럼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예외품목의 과다, 특별교역조건 및 자국보호조치 등이, 외부적으로는 자본재에 대한 특별한 조치 및 제 3국과의 특혜무역협정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07년도 기준 MERCOSUR 전체 수입규모의 10%정도에만 대외공동관세를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핵심회원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MERCOSUR의 참여국들은 1) 관세동맹대 자유무역지대 2) 공동체제도의 대정부간 협정의 모호성 3) 회원국 간 경제 규모의 불균형 4) 경제 분야별 불균형 등의 딜레마를 갖고 있다.

□ MERCOSUR의 문제 해결 방안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 관세동맹내의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 2) 보조금 지급의 중단으로 가격구조 왜곡현상 제거 3)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진정한 문제해결 메카니즘의 구축 4) 생산구조의 상호보완을 위한 규모의 경제 및 전문화된 경제 추구 5) 공동체 규범의 국내법규예의 내재화 또는 실현화를 위한 노력 등의 조치를 처방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 및 거시경제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메카니즘의 부재이다. 1999년 브라질의 외환변동환율정책의 포기, 2001-2002년 아르헨티나의 환율정책 포기 및 베네수엘라의 외환통제의 강요 등은 거시경제정책의 소용돌이 시기에 있었던 사례 중의 일부이다.

□ MERCOSUR의 나아갈 길

이러한 거시경제적 조정의 부재는 회원국 사이의 보완성 및 거시경제적 조정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의 결여로 회원국들의 의견수렴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그 원인이다. 거시경제의 불균형은 공동체 통합의 불균형, 무역흐름의 왜곡 및 정치적 민감분야의 경쟁력 취하 등으로 이어져 회원국의 경제부흥정책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MERCOSUR는 거시경제적 협력과 통합의 제도적 장치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토대로 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약속을 이행하여 경제주체로의 신속하고 실용적인 약속을 촉진시켜 대외적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반면에 제도적 장치 및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날 세계의 현실이 요구하고 있는 경쟁력 및 혁신적인 도전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5월 호에는 중남미지역의 "④CAN(안데스공동체)"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 오 병 열
objy@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납세 의무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는 월별납부제도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및 재수입면세 대상 시행 규칙 일부 개정 등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월별납부제도의 확대

월별납부제도는 수출입업체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기업지원효과를 인정받아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청 고시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관장이 월별납부를 승인하는 경우 그 승인 유효기간을 승인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정함으로써 현행 유효기간보다 1 년이 연장 되었다. 또한 유효기간 1 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였다.

▪ 덤핑방지관세제도의 WTO 반덤핑협정 도입

대표적인 탄력관세인 덤핑방지관세 제도에서는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 부과 시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하였다. 또한 기존에 WTO 반덤핑협정과 상충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 판정 결과 본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그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신규공급자의 경우 조사 완료시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유예 받을 수 있다.

▪ 담보제공 대상자의 구체화

관세법에서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시행령에서는 담보제공 대상자를 최근 2 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으로 정하였다.

▪ 관세조사 시 납세자 권리 증진

납세의무자가 관세 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 기간은 20 일 이내로 제한되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여 관세조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납세자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재수입면세 규정의 정책적 목적 재정립

관세법에서 재수입면세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 2 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 개정하였다. 앞으로 수출품을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후 재수입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사용 후 새로운 부가가치창출을 위해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이 불가하여 재수입면세의 정책적인 목적이 명확해졌다.

다만 시행규칙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해외에서 사용된 물품일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내용연수가 3 년 이상인 물품은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시부터 관리 현재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에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세관에서 해외임가공 과정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였다. 이에 수출신고자가 원재료 등을 수출할 당시에 미리 해외임가공의 취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일반형태 수출로 신고한 물품은 이후 수입통관될 때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 감면 규정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서 유 진

(yjseo@customsservic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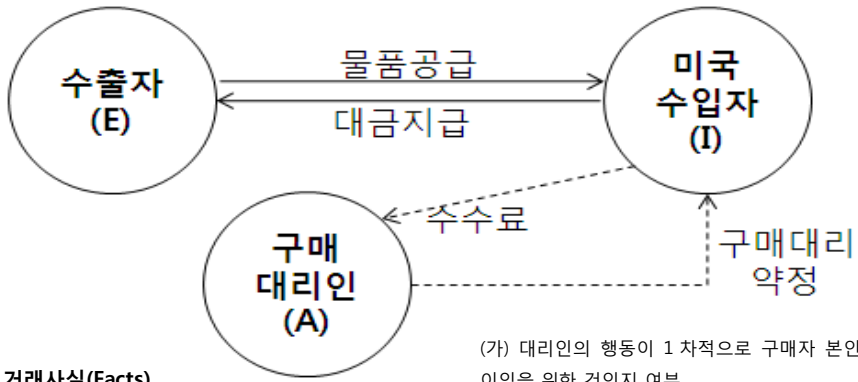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⑩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테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테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특정 구매수수료의 과세 여부 (HQ545938 1996.06.05)

Assist(생산지원비용)이란 우리 관세법 제 30 조 1 항 3 호 규정의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①수입물품 생산에 사용 되는 재료 및 부분품, ②공구, 금형, 다이스 등 ③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④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디자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지원비용은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과세되므로 어떠한 비용이 생산지원비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거래사실(Facts)

1. 수입자(I)는 구매대리인들(28 명)을 통해 여러 제조자로부터 신발, 의류, 가방 등을 수입하고 있음
2. 구매 과정에서 주로 구매대리인이 공장을 선택하며, I 는 디자인 선택 등에 있어 제한된 권리만을 행사함
3. 그러나 I 는 자신이 최종 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물품 수입에 있어 필수적인 지시와 통제는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4. I 는 구매대리인들과 구매 대리 약정(buying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음

□ 쟁점(Issue)

I 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I 가 구매대리인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진정한 구매수수료(bona fide buying commissions)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 근거

가. 미국으로 물품 수입 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평가 방법은 '당해 물품의 거래 가격에 의한 평가'(관세법 19 U.S.C §1401a)이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란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가격'이란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뜻하며, 운송, 보험을 위한 비용은 제외함. 진정한 구매수수료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함.

2. 관련 판례 및 사례 분석

가. 관련 판례

(1) J.C.Penny Purchasing Corp. 판례 (1978)
진정 구매수수료의 존재는 각 사안 별로 관련된 사실 관계에 달려있음.

(2) New Trends, Inc. 판례 (1986)

진정한 구매대리관계 또는 진정한 구매수수료 인지 여부의 입증 의무는 구매자에게 있음

(3) Dorco Imports 판례 (1971)

구매대리약정의 존재로 구매대리관계가 있음을 지지할 수 있음

(4) Rosenthal Netter 판례

진정한 구매대리관계의 존재 여부 결정을 위하여 구매자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아야 함.

- (가) 대리인의 행동이 1 차적으로 구매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 (나) 구매자가 선적과 물품관리 및 그 비용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다) 구매자가 대리인 없이 물품을 제조자로부터 바로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 (라)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독립적인 영업을 한 것인지 여부
- (마) 대리인이 제조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나. 관련 예규

(1) ruling HQ 543503 (1983.7.11)
U.S CORPORATION 이 자신의 비용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수입하고, 미국 내 주요 수입자들에게 구매 대리인 역할도 하였음. 비록 자신이 수입자 및 국내판매자가 되었지만 이는 진정한 구매대리인이라는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2) ruling HQ 544958 (1992.6.8)

거래 당사자간 관계나 사업은 진정한 구매대리 관계를 결정짓지 못함. 대신 이러한 의문들은 제출된 증거로 해결이 됨.

이와 유사하게 ruling 544945 (1995.6.30)와 ruling 545794 (1995.8.9)에서는 대리인이 여러 소매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대리인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함

다. 28 명 중 9 번째 대리인(A1)에 대한 분석

(1) A1 은 I 가 구매하는 신발류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소유하지 않고, 디자이너를 고용하지도 않으며, 본질적인 디자인을 제공하지 않음.

(2) I 가 비록 실제로 공장과 협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나, 제조자 선정에 본질적으로 관여함

(3) L/C 는 A1 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여기서 수수료, 핸들링 차지 등을 공제하지 못함. I 와 외국 공급자 사이의 거래서류(인보이스 등)에도 A1 의 수수료가 포함되지 아니함.

(4) I 는 A1 이 없더라도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

(5) 특히, A1 의 서비스는 구매가능성의 조사, 시정정보 및 샘플획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I 가 직접 견적을 보고 발주를 하고,

대금 지급도 공급자에게 직접하였으며 배송도 공급자로부터 바로 받았으므로, A1 은 구매계약중 어떠한 조건에 대하여도 변경할 수 없음.

(6) A1 은 자신의 이익을 위주로 하는 독립적 사업을 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하거나 소유권을 넘겨 받지 아니함.

비록 A1 이 독립적인 수입업 또는 판매업을 하더라도, 이는 I 와 A1 간 거래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거래임

(7) A1 은 통상적인 구매대리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I 가 A1 을 컨트롤 함. 따라서 A1 은 I 의 진정한 구매대리인 임.

라. A1 이외의 구매대리인들의 경우
A1 이외의 대리인들에 대하여는 불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진정한 의미의 구매대리인 관계의 존재 여부를 결정 짓기 어려움

(1) 제출된 구매대리 약정에 주장된 대리행위가 어떻게 제공될 것인지, 주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의 나와 있지 않음. 어떤 경우에는 수입 물품 조차 약정에 나와 있지 않음.

(2) 디자인에 대한 구매대리인(주장)의 역할이 확정적이지 않음.

(3) A1 을 제외한 다른 대리인들과는 발주서, 송장, 지급증빙과 같은 거래 서류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음. 이러한 서류 없이는 I 의 실질적인 통제 능력을 파악할 수 없음

(4) I 에게 구매대리인들(주장)은 수입자, 국내구매자로 행동하였고 종종 자신의 재고에서 판매하기도 했음. 또한 몇몇의 대리인은 공급자와 특수 관계가 있거나 그에 의해 공급자의 주요 판매가 결정되었음

(5) 따라서 A1 을 제외한 다른 대리인들은 진정한 의미의 구매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음.

□ 결정(Holding)

1.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하여 볼 때, I 가 A1 에 지급한 비용은 진정한 의미의 구매수수료를 구성하며, 따라서 A1 에게 지급된 비용은 수입되는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2. A1 이외의 대리인들이 진정한 구매대리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다른 충분한 증거들이 있어야 할 것임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 수 영

(sykim@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이 시린 봄날... 그래도 꽃은 피었습니다.



무고하게 가신 분들의 영정에 기도와 꽃다발을 올립니다.

지난 한달 간 온 국민을 긴장과 슬픔으로 지내게 한 천안함 침몰사고는 이제 함미가 인양이 되고, 8명을 제외한 36명 실종자의 시신이 돌아옴으로써 상황의 정리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부터 원인규명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반국민들은 이제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값지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승희

대표 관세사 다행히 국제신용평가회사인 Moody's 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2 에서 A1 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전체 21 개 신용등급 가운데 5 번째로서 IMF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간 것 입니다. 또한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6%에서 5.2%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어려울 때에 일어서는 힘이 한국인의 능력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고객들께서 지난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계시지만 아직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를 겪고 있는 분들께서도 일부 계십니다. 지지치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힘을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AEO 제도의 중요성은 좀 더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Terrorism 은 이제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닐 것 입니다. 북한의 게릴라전 식 도발 가능성은 또 다른 양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18 개의 업체만이 AEO 인증을 받은 상황이나 많은 업체들이 심사 중에 있는 등 2010년에는 약 250 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점점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조심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정성스럽게 중요한 내용들을 모았습니다. 부디 고객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이기를 바랍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COVER STORY - AEO 제도의 현재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컨설팅 2 팀 팀장
- AEO T/F Team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FTA News-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최 대 규 관세사
(dk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Voices From The Fields-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③



오 병 열 교수님
(obyjy@customs.go.kr)

PROFILE

- 現)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
- 前)인천공항세관
- 도미니카공화국 컨설팅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월별납부제도 일부 개정 및 재수입면세 대상 일부 개정등



서 유 진 관세사
(yjse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AEO T/F Team
- 인천경기지사
- 2008 관세사시험 수석합격

US Rulings 연재⑩ 특정구매수수료의 과세여부



김 수 영 관세사
(sy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AEO T/F Team
- 서울본사